

무극도 창도와 해산 시기 - 대순진리회의 관점을 중심으로 -

박상규*

■ 국문요약

종단 대순진리회는 무극도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무극도 역사 서술은 대순진리회 역사의 기초를 정립하는 작업으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창립과 해산 시점에 대한 상이한 기술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여왔다. 상이한 기술의 가장 큰 원인은 무극도의 역사, 즉 정산의 행적에 대한 부정확한 전승과 이에 기반한 역사 해석이 면밀한 고증이나 검증없이 자료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1987년 이후에 간행된 태극도 경전이 무극도 역사의 정보 기반으로 자주 활용되고 일부 대순종학 연구자들이 1974년에 발행된 대순진리회 경전보다 태극도의 경전에 기반하여 작성된 문헌을 무극도 서술에 참고하면서 상이한 기술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종단은 1968년 대순진리회와 태극도로 분열되었고 태극도의 경전은 1970~80년대에 수집하고 재해석한 정산의 언설과 행적을 기반으로 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극도 관련 연구 시 대순진리회의 경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그 외의 문헌 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증을 할 필요가 있다.

대순 신앙체계와 부합하면서도 일체의 종교 정책과 관련된 문헌 정보와도 모순되지 않는 무극도 창도와 해산 시기 등이 본 연구를 통해

* 아시아종교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parkthanks@hotmail.com

고증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1909년 4월 28일 정산의 봉천명으로부터 종단 무극도는 태동되었다. 둘째, 무극도의 창도, 즉 탄생은 정산이 태인도장을 이룩하고 이를 중심으로 종교활동을 시작하는 1925년 4월이다. 셋째, 무극도는 1925년 비밀 결사에 가까웠던 교단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유사종교단체로 인정받았다. 넷째, 1936년 일제의 ‘유사종교단체’ 탄압이 강화되자 정산은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태인도장을 떠나면서 종단을 비밀결사로 전환하고 1941년까지 은밀하게 종교활동을 전개했다. 다섯째, 정산이 무극도를 해산하는 시기는 강화된 치안유지법으로 일본의 국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종교 결사와 종교적 언동의 처벌이 가능해진 1941년 5월 이후이다. 여섯째, 도장이 총독부에 강제로 넘어가는 시기는 1942년 4월이다.

주제어: 대순진리회, 무극도, 유사종교해산령, 종교단체해산령, 치안유지법, 포교규칙

- I. 들어가며
- II. 무극도 설립 시기
- III. 무극도 해산 시기
- IV. 나가며

I. 들어가며

대순진리회의 전신은 무극도와 태극도이다. 이 세 단체는 연속된 종단이기에 대순진리회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무극도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무극도 서술에 있어서 그 설립과 해산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 나타난다. 현재까지 이 상이한 관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무극도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져 그 역사 기술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무극도의 창도와 해산에 대한 상이한 관점은 교단사 기술에 있어서 일관성의 부재라는 문제를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관점의 차이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전승과 교리에 기반한 역사 해석의 차이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교단의 해산 시기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다. 1936년 유사종교단체해산령에 따라 정산이 무극도를 해산했다는 전승에 따르면 종단 무극도는 1936년 해산되었으며 정산은 1936~45년까지 10년간의 기다림 끝에 종단 무극도의 활동을 재개한 것이 된다. 하지만 정산이 1941년 무극도를 해산했다고 보는 관점에서 정산은 1936년의 해산 조치에 불복하고 비밀결사로서 활동을

계속하다 1941년에 이르러 종단을 해산하였으며 해방 후에 다시 무극도 활동을 재개한 것이 된다.

1936년의 무극도 탄압을 중요한 교단사적 사건으로 보는 전자의 관점은 1936~45년간의 10년을 잠룡 회룡 도수로 보는 전승과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¹⁾ 이에 반해 1936년의 탄압보다는 이차대전에 따른 종교단체해산령, 즉 일제의 종교정책 변화를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 후자의 관점은 1941~1945년의 5년이 인덕도수와 잠복도수라는 전승과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²⁾

위와 같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극도의 창도와 해산에 대한 서술을 역사적으로 고증하고 교리 해석의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 무극도의 창도와 해산이 교단사 기술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제 강점기의 종교 결사의 설립과 해산에 있어서 종교정책이 거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작용했기에 창도와 해산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종교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지만 이 역시 간과되었다.³⁾

무극도 창도와 해산에 대한 기존의 상이한 관점과 해석이 나타난 것은 일제의 종교 정책을 비롯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전승과 그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권동우의 연구는 이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사종교단체해산령에 대한 고병철의 문제 제기에 기반하여 일괄적인 유사종교단체해산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1935년 말부터 시작된 무극도 탄압과 해산 과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⁴⁾

1) 1980년까지 태극도는 무극도 해산을 이차대전(1939~1945) 시기로 보고 있었다. 『태극도요람』 (부산: 태극도신도회, 1980), p.43 참조. 1936년을 무극도 해산 시기로 보는 관점은 1987년에 간행된 『진경전서』부터 나타났고 1989년에 명문화되었다. 태극도 편찬위원회, 『진경전서』 (부산: 재단법인태극도, 1987), p.319; 태극도편찬위원회, 『태극도통감』 재판 (부산: 태극도출판부, 1989), p.27 참조.

2) 대순진리회교무부, 『진경』 초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4), p.211 참조.

3) 무극도의 해산과 관련된 역사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한 이는 권동우가 거의 유일하다. 권동우, 「유사종교해산령의 실체에 관한 연구: '무극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 44-4 (2021), pp.41-78 참조.

무극도 창도와 해산에 관한 역사적 서술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창도와 해산에 시기에 대한 기존의 전승, 서술, 해석을 분석하여 이에 관한 기술이 대순 종학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무극도 설립 시기

종단 무극도의 태동과 창도에 관한 서술은 크게 세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정산이 만주로 망명을 한 1909년 4월 28일(음력), 즉 봉천명(奉天命)의 날을 종단의 태동으로 보는 견해로 『대순진리회요람』에 나타난다. 『대순진리회요람』은 대순진리회를 ‘60여 년간의 발전사를 가진 종단의 명칭’으로 정의하는데, 종단의 시작점을 ‘정산이 강성상제, 즉 증산으로부터 종통계승의 계시를 받은’ 사건으로 보고 있다.⁵⁾ 『대순진리회요람』의 발행일은 1969년 4월이고 그 연혁에서 대순진리회의 창설을 1969년 4월로 기록하고 있다.⁶⁾ 따라서 종단이 60여년의 발전사를 지니기 위해서는 1910년 이전에 종통계승의 계시가 있어야 한다. 1910년 이전에 정산이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은 대순진리회의 『전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당은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이후 4월 28일을 창도일이 아니라 봉천명일로 기념했고,⁷⁾ 1993년의 봉천명 치성

4) 같은 글, p.42, pp.65-72; 고병철, 『일제하 종교 법규와 정책, 그리고 대응: 종교 법규와 종교 범주의 관계, 그리고 남긴 숙제들』 (서울: 박문사, 2019), p.390 참조.

5) 1969년을 요람의 발행년도로 기록하고 있는 요람의 조직도에는 학교법인 대진학원과 연구위원회가 처음 나타난다. 학교법인 대진학원이 1984년에 인가를 득하였고, 교무부 산하의 연구위원회가 1985년에 설치되었으므로 그 인쇄년도는 1985년으로 추측된다.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85), p.5 참조.

6) 같은 책, p.13 참조.

7) 1972년 2월 16일 대순진리회의 초대 교무부장으로 임명된 김하정이 1971~72년 쓴 일지는 성제일지라는 제목으로 현재 사본이 남아있다. 『성제일지』, 1972. 2. 16. 참조. 여기에는 1971년 5월 22일(음력 4월 28일)을 ‘도주님(정산) 봉천명 6회 기념치성일’로 기록하고 있다. 『성제일지』, 1971. 5. 21, 1971. 5. 22 참조.

일에는 ‘1909년 4월 28일 종통계승의 계시가 정산에게 있었음’을 말한 바 있다.⁸⁾ 이것은 우당이 대순진리회 창설 이후 1909년 4월 28일에 정산이 계시를 통해 천명을 받들면서 종통을 계승했다는 것을 공식화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대순진리회요람』은 1909~58년의 정산의 “오십년공부(五十年工夫)”라는 대순 신앙의 교리 체계를 기반으로 오십년공부의 시작점인 1909년 4월 28일을 종단의 태동으로 보면서 1925년 4월을 종단 무극도의 창도, 즉 탄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⁹⁾

둘째, 정산이 24세가 되는 1918년, 자신의 연원이 증산임을 명확히 하면서 본격적인 전도(傳道)를 시작하는 시점을 종단의 탄생으로 보는 관점은 태극도의 『수도요람』(1963), 『태극도안내서』(1966), 『태극도월보』(1967), 『대순회보』(1983) 등에 나타난다. 『수도요람』은 그 연혁에서 정산이 24세가 된 1918년 4월 무극도가 창도되었다고 서술하고 있고, 『태극도안내서』도 동일하다. 1967년 1월의 『태극도월보』의 연두사에서 우당은 유명으로 자신이 도의 운영을 맡은지 10년이며, 정산이 도를 창립한지 50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¹⁰⁾ 우당이 종통을 계승한 시점은 1958년이기에 정산이 무극도를 창립한 시점은 1918년이 된다. 이는 1968년 5월 발간된 『태극도월보』 11호에 1968년 5월 24일(양력)이 창도 50주년이고, 1918년 4월 정산이 무극도를 창도했다는 기사가 있다는 사실로도 방증된다.¹¹⁾ 1918년을 창도로 보는 관점은 대순진리회가 창설되고 15년이 지난 1983년까지도 나타나는데 대순회보 창간호에서 1983년까지를 ‘진법구현 66년사’로 정의하고 있다.¹²⁾

8) 「봉천명치성 봉행」, 『대순회보』 37 (1993), p.8 참조.

9) 정산은 증산이 남긴 ‘치천하 오십년(治天下 五十年)’, ‘포교오십년공부종필(布教五十年工夫終畢)’, ‘오십년 공부(五十年 工夫)’ 등을 자신의 일로 해석했다. 여기에 관해서는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경』 초판, p.41, p.146, p.163, p.220 참조.

10) 박한경, 「연두사」, 『태극도월보』 (구)1 (1967), p.2 참조.

11) 김해구, 「전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기틀: 창도 오십주년을 맞으면서」, 『태극도월보』 11 (1968), p.4; 「창도일 기념치성 성대」, 『태극도월보』 11 (1968), p.14 참조.

12) 「진법구현 ... 66년사」, 『대순회보』 1 (1983), p.15 참조.

결국 1960~1980년대 초까지 종단의 탄생을 1918년으로 보는 견해가 대순 신앙 내에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³⁾

셋째, 태인도장이 이룩되면서 도장을 중심으로 한 공개적인 종교활동이 시작되는 1925년 4월을 종단의 탄생, 곧 시작점으로 보는 관점은 대순진리회의 경전에 나타난다. 『전경』에는 1924년 4월 도장 부지 조성, 1925년 무극도 창도, 해방 이후의 부산 보수동과 감천을 중심으로 한 정산의 종교활동, 우당의 종통 계승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¹⁴⁾ 『대순진리회요람』 연혁에는 1925년 4월 종단 무극도 창도, 1948년 도본부 부산 설치, 1958년 도전 박한경(우당) 종통계승, 1969년 우당의 기구 개편과 대순진리회 창설이 기록되어 있다.¹⁵⁾ 본부의 이동 및 조직 개편을 중심으로 한 『전경』, 『대순진리회요람』의 종단사 서술은 태극도와 대순진리회를 무극도의 후신으로 보고 무극도에서 시작된 교단이 대순진리회로 연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산을 봉안한 도장과 이를 중심으로 한 공개적이며 공식적인 종교활동의 시작을 종단 무극도의 탄생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한다면 첫째는 종단의 태동을 정산의 ‘오십년공부종필’이라는 교리적 관점에서 1909년 4월 28일로 해석하고, 종단의 탄생을 1925년 4월의 무극도 창도로 보면서 태동과 탄생을 분리하는 관점, 둘째는 정산이 자신의 연원이 증산임을 확인하고 원평(구태인)을 본부로 하여 종교활동을 시작하는 1918년을 종단의 탄생으로 보는 관점, 셋째는 종단의 탄생을 정산이 도장을 이룩하고 공개적인 종교활동의 시작하는 1925년 4월로 보는 관점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서로 모순되는 관점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종단의 창도가 1918

13) 부산 태극도의 경우 1980년까지는 1918년 4월 무극도가 창도되었다는 『수도요람』(1963)의 기록을 수용했다. 하지만 1987년 『진경전서』 간행 이후 1921년 4월 28일을 무극도 창도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1921년 정산이 스스로를 무극도주로 선포했다는 전승에 근거한다. 태극도편찬위원회, 『진경전서』, p.282; 태극도편찬위원회, 『태극도통감』 재판, p.26 참조.

14)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경』 초판, p.201, pp.211-220 참조.

15)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1985년판, pp.12-13 참조.

년인지, 1925년인지가 문제가 된다.

1918년에 무극도가 창도되었다는 관점은 정산이 24세가 되던 1918년에 계시에 따라 태인에 자리를 잡고 증산을 연원으로 한 종교 활동을 시작했다는 전승을 기반으로 한다. 『전경』에 따르면 정산이 “태인에 가서 나를 찾으라”는 계시를 따라 만주를 떠난 시점은 1917년 4월이다.¹⁶⁾ 이후 정산은 자신을 태운 배가 도착한 태안을 태인으로 알고 안면도에 머무르다가 1918년 가을에 이르러 원평을 거쳐 동곡약방에 도착하고 10월에는 대원사까지 오게 되었다. 또한 이때 원평 황새마을에 가족들을 이주시키면서 근거지를 안면도에서 원평으로 옮기게 된다.¹⁷⁾ 이후 무극도 창도 시기인 1925년 4월까지 이곳이 종교활동의 본부로 역할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된 바 있다.¹⁸⁾

원평과 황새마을이 1914년 이전에는 태인군에 속해 있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결국 정산은 태인으로 가서 자신을 찾으라는 증산의 계시를 1918년 10월에 완료하면서 자신의 연원이 증산임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부를 마련하고 포교를 비롯한 조직적인 종교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18년을 종단 탄생, 즉 창립의 시기로 보는 관점은 일견 합리적이다.

하지만 1960년대의 문헌인 『수도요람』, 『태극도안내서』, 『태극도월보』에 있는 1918년 4월 구태인에서 정산이 무극도를 창도했다는 기사는 개연성이 없다. 1918년 4월에 무극도를 창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나 전승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1918년 2월에 정산의 부친인 조용모의 본적지가 만주에서 안면도로 이전된 사실은 정산이 1918년 4월에 구태인에서 무극도를 창도했다는 주장이 개연성이 없

16) 같은 책, p.12 참조.

17)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경』 초판, pp.192-193 참조.

18) 종단역사연구팀, 「황새마을을 찾아서」, 『대순회보』 191 (2017), pp.22-29 참조. 『무극대도개황』은 정산이 황새마을, 즉 감곡면 계룡리로 이주한 시기를 1921년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1936년 1월의 매일신보 기사는 1918년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全羅北道, 『無極大道敎概況』 (1925), p.3; 「民衆을 荼毒한 無極道の 極惡相 (一)」, 《매일신보》 1936. 1. 26.

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¹⁹⁾ 무극도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록으로 평가 되는 『전경』 역시 1918년 10월 이후에 정산이 원평(구태인)으로 본거지를 옮겼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⁰⁾ 1918년의 구태인에서의 종교활동 개시와 1925년 4월의 무극도 창도라는 전승이 뒤섞이면서 1918년 4월의 무극도 창도라는 오류가 나타났다고 추측된다.²¹⁾

우당은 1960년대에 1918년이 무극도 창도 시점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이를 용인했지만 4월로 시점을 특정한 사실이 없고 대순진리회 창설 이후에는 경전을 통해 1925년 4월에 무극도가 창도되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태극도에서 종통계승일로 지칭되던 1917년 2월 10일을 감오득도일로, 창도일로 지칭되던 4월 28일을 봉천명일로 변경했다.²²⁾ 이는 종통계승의 시작점이 1917년 2월 10일이 아니라 1909년 4월 28일이라는 해석을 통해 정산의 오십년공부라는 교리가 교단사 서술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4월 28일이 창도일로 불려지게 된 이유가 1918년이나 1925년 4월에 정산이 무극도를 창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산이 1909년 4월 28일의 봉천명을 통해 종통을 계승함으로써 종단이 태동되었기 때문임을 밝힌 것이다. 결국 대순 신앙에서 종단 무극도는 1909년 4월 28일 정산의 봉천명에 의해 태동되었고 1925년 4월 탄생, 즉 창도되었다고 보는 관점이 올바른 것이다.

교단 공개의 기준으로 공식적인 무극도 창도 시점을 검토해 본다면 1925년이 더욱 분명해 진다. 즉 공식적 창도를 교단 공개와 포교 합

19) 종단역사연구팀, 앞의 글 p.24 참조.

20)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경』 초판, pp.192-193 참조.

21) 이 오류를 우당이 알고 있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우당의 입장은 아니라고 추측된다. 우당은 1956년 『태극도통감』 편찬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 1960년대의 『수도요람』, 『태극도안내서』, 『태극도월보』의 편찬 실무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태극도 문헌 기록이 1970년대 대순진리회의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대순진리회 창설 이후 우당에 의해 태극도 문헌의 오류가 수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규정』 (부산: 태극도, 1963), 「의식규정」, p.2; 태극도본부교화부, 『태극도안내서』 (부산: 태극도본부교화부, 1966), p.14; 『성제일지』, 1971. 5. 22, 1972. 3. 23 참조.

법화로 본다면 1925년일 수밖에 없다. 일제의 종교 정책과 관련하여 무극도의 교단 공개 시점을 검토해 보면 이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라북도에서 무극도에 관한 비밀문서로 작성한 『무극대도교개황』(1925)의 후반부에는 강령, 도규, 취지서, 간부일람표 등이 있다. 이들은 전반부와 달리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 및 한자로 되어있는데, 내부 정보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노출되면 교단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문헌이지만 이를 전라북도에서 입수할 수 있었던 것은 1920년대에 이르러 조선총독부가 신종교 특히 보천교를 비롯한 증산 종단에 대해서 교단 공개를 유인 또는 강제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15년의 일제 종교정책의 변화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15년 일제의 <포교규칙(布教規則)>은 1906년의 <종교선포에 관한 규칙>과 달리 종교선포자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종교유사단체 인정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포교규칙> 제15조 1항에서 ‘총독은 필요한 경우 종교유사단체로 인정한 단체에 본령을 준용할 수 있음’이라고 하여 종교유사단체로 인정되면 <포교규칙>을 준용하여 종교와 같이 취급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²³⁾

이는 첫째, 종교 행정의 소관 밖에 놓인 단체라는 범주에 속하면서, 결사로서의 존재를 허가받은 단체(종교적 결사)를 종교행정상의 ‘종교유사의 단체’로 인정하는 규정이 성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종교유사의 단체’는 종교행정의 관리를 받는 회유의 대상이 되었고 존재를 허가받지 못한 비밀결사는 단속의 대상이 된 것이다.²⁴⁾ 둘째, 신종교들이 종교행정의 관리를 받는 공인단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종교유사의 단체’가 종교와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²⁵⁾ 물론 총독의 결정에

23) 고병철, 앞의 책, pp.107-109 참조.

24) 아오노 마사야키, 『제국신도의 형성』, 배귀득·심희찬 옮김 (서울: 소명출판, 2017), pp.388-389 참조.

25) 같은 책, p.389 참조.

따른 조건부에 해당하고 강한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교단 공개의 유인책으로는 부족했다. 하지만 대종교가 1915년 12월 21일 포교규칙에 의거 신청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하고 기각된 일이 있다는 사실은²⁶⁾ <포교규칙> 15조가 신종교에는 교단 공개를 시도할만한 유인책으로 작용했음을 잘 보여준다.

<포교규칙>은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1920년 개정되었는데, 종교시설의 설립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엄격한 여러 신고 조항도 축소되었다.²⁷⁾ 따라서 <포교규칙> 15조가 신종교 교단의 교단 공개에 대한 강한 유인책이 되었음은 틀림없다. 물론 <포교규칙>에는 ‘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종교시설의 사용을 금지시킨다’는 새로운 규정이 있었지만, 불교와 기독교 등의 종교와 동등하게 인정받으면서 조선총독부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유혹이었을 것이다.²⁸⁾

1915년의 <포교규칙> 제정, 1920년의 <포교규칙> 개정 등을 통해 조선총독부는 신종교에 대한 정책 전환을 표방하여 교단 공개를 유인하고, 교단이 공개되면 기존의 통제 법령을 적용하여 신종교를 회유 및 단속하고자 했다.²⁹⁾ 조선총독부가 비밀결사로 활동했던 신종교의 공개를 유인 및 강제하면서 증산 종단에서는 보천교가 처음으로 교단을 공개했다. 보천교 교단 공개 논의가 1921년 10월부터 진행되어 1922년 초에 이루어졌기에 보천교가 비밀결사에서 공개된 종교적 결사로 인정된 시기는 1921년 말~1922년 초였을 것이다.³⁰⁾ 이에 대해

26) 윤이흠,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 (서울: 모시는사람들, 2007), p.45 참조.

27) 고병철, 앞의 책, pp.119-120; 김철수,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 (대전: 상생출판, 2017), pp.37-38 참조.

28) 1920년 5월 종교유사단체에 해당했던 승신인조합이 허가를 신청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점은 이러한 분위기를 방증한다. 김철수는 이 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고병철은 허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책, p.38; 고병철 앞의 책, p.547 참조.

29) 이러한 가장 명확한 예를 1922년 보천교의 교단 공개에서 볼 수 있다. 안후상, 「식민지시기 보천교의 ‘공개’와 공개배경」, 『신종교연구』 26 (2012), pp.166-176 참조.

30) 박상규, 「근대 한국 신종교의 조직 연구: 연원제를 중심으로」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1), p.79 참조.

서 전라북도 1921년 말 보천교가 종교유사단체로 공인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³¹⁾ 여기에서 ‘공인’은 보천교가 해산의 대상이 되는 비밀결사에서 존재를 허가받은 종교적 결사로 전환하면서 그 포교가 법적 테두리안에서는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³²⁾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무극대도교개황』 후반부에 있는 ‘강령’, ‘도규’, ‘취지서’, ‘간부일람표’ 등도 무극도가 존재를 허가받은 종교적 결사로 전환하기 위해 교단을 공개하려는 목적에서 내부에서 작성되어 관에 제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³³⁾ 『무극대도교개황』의 마지막에는 1925년 11월 5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무극도의 ‘간부일람표’가 있다.³⁴⁾ 이를 통해 추론해 본다면 무극도의 교단 공개와 종교적 결사로서의 인정은 1925년 말에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의 두 기사는 1924~25년에 무극도가 비밀결사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종교유사의 단체’로 인정 받기 위해 관과 교섭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시내 도염동에 사는 조모(某)라는 사람이 교주가 되어있는 무극교라 하는 종교 단테는 이미 창설된지가 오래인 것이나 창설 이래 그 포교 수단이 치안방해가 되는 덤이 만타하여 경무당국에서는 교주 조모를 불러가지고 그 교단의 해산을 명하고 일절 그 존재를 업새고자 하였든바 이 무극교인 일동은 당시에 경무당국에 향하야는 해산을 하게다 연명하고 그 간판까지 떼어 표

31) 전라북도, 앞의 책, p.3 참조.

32) 이에 대해서는 아오노 마사야키, 앞의 책, pp.387-395, pp.401-406 참조.

33) 신종교들은 위협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종교적인 부분이나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부 정보나 교리의 노출을 지양한다. 『무극대도교개황』의 후반 부분은 이를 잘 보여준다. 강령이나 취지에 종교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용어들이 대부분 삭제되고 수행 단체의 정체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무극대도교개황』의 교리 관련 기록은 전승되어 내려오는 당시의 교리체계와 편차를 보인다. 취지에는 신앙의 대상인 증산이나 상제라는 표현이 전혀 없으며, 신앙 대상도 천(天)이나 도(道)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宗旨와 목적은 수록되지 않고 ‘사강령’과 ‘삼요제’ 일부만이 강령으로 종합되어 요약되어 있다. 또한 도규에 성직자를 직원으로 지칭하고 있어 마치 법인의 사원(社員)과 같은 형식을 보인다. ‘무극도 간부일람표(無極道幹部一覽表)’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 앞의 책, pp.19-52 참조.

34) 같은 책, p.37 참조.

면으로 보면 과연 무극교는 업서진 것가티 보히나 사실 그리면 에잇서 디당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아즉도 성히 포교와 선단을 하는 것이 다시 경무국의 귀에 드러가게 되어 경무국에서는 각도경찰에 비밀한 통령을 발하고 무극교의 박멸책을 엄명 하얏는데35)

경인선 오류동역 압해 사는 일인 소봉원작(小峰源作)이란 자는 그 성명 김재현이라고 고쳐 조선 사람 행세를 하고 ... 시내도영동 칠십번디에 있는 무극교 간부 조용모와 리우형을 작년 십월에 차져보고 자기네는 경북경찰부장과 총독부 당국자와는 절친한 터인데 그들로부터 들은즉 무극교는 흑세무민과 치안방해 등의 혐의가 잇서 오래지 아니하여 해산을 명할 터미라 함으로 과연 해산이 될는지도 모르게스니 만일 그대들이 우리의 러비와 운동비만 당하여 주면 당국자에게 교섭을 원만히 하여 해산이 되지 안도록 하여 주겠으며36)

무극도는 1925년에 교단을 공개하면서 비공인종교단체이지만 법적으로는 종교적 결사로서 ‘종교유사의 단체’, 즉 ‘유사종교’의 범주에 포괄되었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포교 등 결사로서의 활동이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무극도의 공식적인 창도는 교단 공개를 통해 종교적 결사로서 인정 받은 1925년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Ⅲ. 무극도 해산 시기

무극도 해산에 대한 교단 기록 중 가장 앞선 것은 1956년 간행된 『태극도통감』의 “대동아전쟁당시 종교단체 해산령에 의하여 도인의

35) 「无極教解散命令」, 《조선일보》 1925. 3. 27.

36) 「无極教徒속혀 사기환자피소」, 《조선일보》 1925. 5. 28 참조. 기사에 등장하는 김재현은 1919년 제세교, 1920년 제화교를 만들어 동학과 태을교 신도들을 유인하다가 1920년 승신인조합을 결성하여 경무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 고병철, 앞의 책, p.547 참조.

행동연락을 중지하시고”라는 내용이다.³⁷⁾ 이 기록은 정산의 명에 따라 서거하기 전 출판된 것이므로 정산에 의해 검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산은 무극도의 해산 시기를 대동아전쟁 당시로 기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3년 발행된 『수도요람』은 ‘1941년경 이차대전 당시의 종교단체 해산령에 의하여 도인과의 연락을 일단 중단’했다고 기술하고 있다.³⁸⁾ 이는 정산의 입장을 계승한 것으로 대동아전쟁이 이차대전으로 변경된 것은 1950년대의 대동아전쟁 개념이 이차대전과 동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산의 무극도 해산은 이차대전 시기인 1939~1945년 중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엄밀하게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이 1941년 12월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태극도통감』에서 주장하는 무극도 해산 시기는 1941년보다는 1942년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당이 일관되게 1941년이 무극도 해산의 시점임을 명확히 했다는 사실로 본다면 『수도요람』의 ‘이차대전 당시’라는 기술이 보다 정확한 기술로 보인다.

1941년에 무극도가 해산되었다는 우당의 견해는 1969년 대순진리회 창설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대순진리회요람』과 『전경』은 정산이 1941년 이차대전 당시 ‘종교단체해산령’에 따라 종교활동을 중지하였으며 이것을 잠복도수와 인덕도수라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³⁹⁾ 1941년의 무극도 해산은 태인도장의 소유권 이전 서류로도 그 개연성이 입증된다. 1925년 5월 매입한 태인도장 터를 매입한 조주혁은 1940년 5월 김진염에게 매매했고 김진염은 1942년 4월 아카키 마사오(赤木正男)에게 다시 매매했다.⁴⁰⁾ 조주혁과 김진염은 주소지와 그 행적으로 본다면 무극도의 간부 또는 신도였을 가능성이 크다.⁴¹⁾

37) 『태극도통감』 (부산: 태극도본부, 1956), p.18 참조.

38) 교화부편찬실, 『수도요람』 (부산: 태극도교회부, 1963), p.17 참조.

39) 대순진리회교무부, 『전경』 초판, p.211 참조.

40) 대순종교문화연구원, 「무극도 해산시기에 대한 고찰」, 『대순회보』 85 (2008), p.24 참조.

결국 태인도장의 총독부 기증은 1942년 4월로 추측된다. 이는 태인도장 내의 건축물 매매가 1943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방증된다.⁴²⁾ 도장의 소유권 변동 과정은 1941년 무극도 해산 이후 도장이 총독부에 기증되었다는 『전경』의 기록과 논리적으로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우당을 따르지 않고 부산에 남았던 태극도 구파는 1980년까지는 이차대전 당시의 종교단체 해산령으로 정산이 종교활동을 중단했다는 견해를 계승했다. 하지만 1941년에 정산이 도인과의 연락을 중지했다는 기존의 기록을 수정하여 오히려 연락을 부활했다고 주장했다.⁴³⁾ 이후 1987년 『진경전서』를 발간하면서 1935년 12월 29일(음력) 정산이 낙화도수와 잠룡도수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였고 1936년 1월 1일부터 종교활동을 중단했다고 기록했다.⁴⁴⁾ 새롭게 수집된 전승을 통해 정산이 ‘종교단체해산령’에 따라 1936년 무극도를 해산하고 1945까지 10년간의 잠룡회룡도수를 밟았으며 1940년부터는 도인과의 연락을 부활했다는 등 교단사를 수정한 것이다.⁴⁵⁾

1936년의 종교단체해산령에 따라 정산이 무극도를 해산했다는 전승은 당시 1935~36년 법령에 ‘종교단체해산령’이나 이와 유사한 효력을 지닌 법령이 발효된 바가 없었다는 사실로 본다면 근거가 없다.⁴⁶⁾ 일제의 용어로는 ‘종교유사의 단체’, 즉 신종교로 범위를 국한하여 살펴보더라도 개별 교단에 대한 취체(取締), 단속, 금지 명령을 통해 해산을 유도하는 방침은 있었지만 일괄적인 유사종교해산령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⁷⁾

일제는 1935년 신종교, 즉 ‘종교유사의 단체’를 해산하기 위해 철

41) 종단역사연구팀, 앞의 글, p.27;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앞의 글, p.25, p.28 참조.

42) 같은 글, pp.24-28 참조.

43) 1970년대 부산 태극도는 정산과 관련된 전승을 수집했고 정산으로부터 연락이 1941년에 있었다는 전승을 확보했다고 보여진다. 『태극도요람』, pp.43-44 참조.

44) 태극도편찬위원회, 『진경전서』, pp.319-320 참조.

45) 태극도편찬위원회, 『태극도통감』 재판, p.27 참조.

46) 고병철, 앞의 책, p.390 참조.

47) 권동우, 앞의 글, pp.44-49 참조.

저한 취제와 적극적인 탄압을 실행할 방침을 세웠고, 1936년부터는 그 방침에 따라 각 지역 경찰은 신종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했다.⁴⁸⁾ 즉 지역 경찰이 개별 교단의 본부나 지부를 상대로 포교, 수금, 집회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서 교도들의 탈교, 전교, 개종을 유도하는 방식인 것이다.⁴⁹⁾ 정산이 이러한 명령을 실제 받은 시기는 1936년 6월 16일로 다음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군 태인면 태흥리에 있는 무극도는…도주 조철제를 지난 十六日 오전 十一時경에 정읍경찰서에 호출하여 포교, 성금, 집회를 폐지함과 동시에 조철제 자신의 단발을 엄명한 바 조는 황공한 태도로 명령에 복종할 것을 서약하였다 한다.⁵⁰⁾

이후 각 지역의 무극도 지부로 압력과 해당 지역 경찰서의 조치가 내려졌다.⁵¹⁾ 따라서 정산이 종교단체해산령, 또는 유사종교해산령으로 1936년 1월 무극도를 해산했다는 전승은 신빙성이 크지 않다. 이는 1936년 연초를 전후로 한 시기에 정산이 입건되어 정읍경찰서에 출석하는 일이⁵²⁾ 있었음에도 전북경찰은 무극도의 해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로도 방증된다. 전북경찰의 공식적 입장은 무극도의 교지에는 법적인 저촉점이 없고 내부 분규로 와해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없다는 것이다.⁵³⁾

결국 1936년 무극도를 해산했다는 주장은 1936년 1~2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⁵⁴⁾ 1936년 6월 포교, 성금, 집회 금지 조치로 정점에

48) 같은 글, pp.56-61 참조.

49) 같은 글, p.59, pp.68-69 참조.

50) 「無極道에도 鐵鎚」, 《매일일보》 1936. 6. 18.

51) 「安東無極敎도 切集會禁止」, 《매일신보》 1936. 6. 30; 「無極大道敎徒의 心田開發第一歩」, 《매일신보》 1936. 7. 7 참조.

52) 「(十)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13 참조.

53) 「愛慾과 物慾의 生活로 瓦解될 無極大道敎」, 《동아일보》 1936. 1. 16 참조.

54) 《매일신보》는 1936년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무극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권동우는 《매일신보》가 당시 총독부 기관지의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고 당시에는 유래가 없었던 연속보도를 통해 총독부와 언론이

이른 탄압에 대응하여 정산이 종교활동을 지하화하기 위해 태인도장을 떠난 것을 무극도 해산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 해석은 1936~45년까지의 10년을 잠룡 회룡도수로 보는 전승 및 교리 해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10년간의 잠룡 회룡도수라는 전승과 해석이 등장하면서 1935년말 이루어진 무극도 탄압과 이에 대한 정산의 대응을 ‘종교단체해산령’에 의한 무극도 해산으로 보는 서술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10년의 잠룡 회룡도수는 1980년대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전승이며 1987년 새롭게 등장했다.

문제는 이 역사 해석이 정산에 의해 감수된 『태극도통감』(1956)의 무극도 해산 시점과 모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1936년 무극도에 가해진 폭압과 이에 대한 정산의 대응이라 할 수 있는 교단의 비밀결사 전환을 무극도 해산으로 보는 관점은 정산을 연원으로하는 대순 신앙 체계에서는 용인되기 어렵다. 정산은 1936년 태인도장을 떠났지만 종교활동을 중지한 바 없으며 교단을 다시 비밀결사 조직으로 전환하여 1941년까지 유지했다.⁵⁵⁾ 이 시기 무극도는 비밀포교를 행하는 비밀

무극도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면서 탄압을 강화했다고 보았다. 권동우는 총 11회의 보도 중 3회는 보도된 바가 없고 7회와 10회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3, 7, 10회 모두 국립도서관의 마이크로필름으로는 확인할 수 있으며 1회의 제목은 “民衆을 荼毒한 無極道の 極惡相”으로 다른 회차와 차이가 있다. 권동우, 앞의 글, p.68 참조; “民衆을 荼毒한 無極道の 極惡相 (一)”, 《매일신보》 1936. 1. 26; “[二]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1. 31; “[三]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4; “[四]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5; “[五]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6; “[六]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7; “[七]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8; “[八]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9; “[九]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11; “[十]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13; “[十一]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14 참조.

55) 1936년 정음본부에의 출입이 금지된 후에도 각 지방에서 일부교도들이 활동을 지속한 것은 확인된다. 권동우, 앞의 글, pp.71-72 참조. 『태극도요람』이나 『태극도통감』 재판에는 1940년, 1941년 정산이 도인과의 연락을 부활했다는 기사가 있다. 이는 오히려 1941년까지 정산이 비밀결사로서 종교활동을 지속했다는 전승이 존재했음을 잘 보여준다. 『진경전서』에는 신빙성이 없는 전승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1936~41년의 기사를 분석해 본다면 정산이 일부 간부나 신도들의 도움으로 비밀결사로서 종교활동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태극도요람』, pp.43-44; 태극도편찬위원회, 『태극도통감』 재판, p.27; 태극도편찬위원회, 『진경전서』, pp.320-324 참조. 대순회보의 다음 기사도 도강폐쇄 이후 정산이 교단을 지하운동으로 전환했다는 전승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일제때 조정산계서는 민족의 얼을 전승시킬 수 있는

종교유사단체로 분류되어 단속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⁵⁶⁾

우당에 의해서 확립된 1941년의 무극도 해산 기사는 정산에 의해 감수된 것으로 신빙성이 크다. 하지만 해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종교단체해산령’이 실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종교단체해산령’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1941년 정산과 무극도 교인에게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령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일제의 법령 변화가 있었다면 사실상 ‘종교단체해산령’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1941년에 조선의 모든 종교 활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비밀결사로서의 무극도 종교활동조차도 중지해야 할 정도로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법령이 새롭게 발효되었다면 이는 ‘종교단체해산령’으로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940년대에 이루어진 종교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940년 4월 일본에서는 종교결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종교단체법>이 시행되었지만 조선총독부는 이를 조선에 적용하지 않고 기존 <포교규칙>을 계속해서 적용했다. 조선에 일본 본토의 <종교단체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3·1운동 이후에 조선에 전개된 회유의 방침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총독부는 <포교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유사종교와 공인종교 양자 모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⁵⁷⁾ 이러한 상황에서 1941년 3월 종래 7개조였던 <치안유지법>이 65개조로 확장 개정되고 5월에 시행 발효되었다. <치안유지법>으로도 조선의 모든 종교에 대한 단속과 통제가 가능했기에 이후 <포교규칙>은 개정되지 않았다.⁵⁸⁾

민족 종단을 창도하시고 종교활동을 전개하시던중 일제의 민족종교 말살정책에 따라 그 해산령에 의거 도장의 문이 닫히고 강제로 폐쇄당함에 종교운동은 지하운동으로 화하고 수난의 역사가 지속되었다.” 「숙원의 「大眞高校」가 道峰區에 세워진다, 『대순회보』 2 (1984), p.3.

56) 아오노 마사야키, 앞의 책, pp.417-419 참조.

57) 같은 책, p.396, pp.422-423 참조.

58) 같은 책, p.423 참조.

개정된 <치안유지법>의 특징은 치안유지 위반 범위의 확대였다. 즉 ‘국체를 부정하고 신궁이나 황실의 존엄을 모독할 수 있는 사항의 유포’를 목적으로 한 결사에 연관된 이들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⁵⁹⁾ 기존의 <치안유지법>이 ‘국체의 변혁이나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한 결사에 대해 적용되었다면 새롭게 들어간 법령 7조는 ‘국체의 변혁’이 아니라 ‘국체의 부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 고사기나 일본서기의 신들과는 이질적인 신을 모시는 종교 단체는 필연적으로 국체를 부정하는 결사가 되며 치안유지법의 적용을 받는다.⁶⁰⁾ 결국 개정된 <치안유지법>은 모든 종교의 교의에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신궁과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사항을 유포할 목적을 지닌 결사로까지 그 대상을 확장했기에 신사나 천황에 대한 의례를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이들까지 <치안유지법>의 처벌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치안유지법 7조는 치안유지를 명분으로 ‘조선인의 이상적 일본인화’를 추진하려던 법적 장치였으므로⁶¹⁾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했고, 일본의 국가 신도 체계를 수용하지 않는 종교 신앙과 언동을 처벌할 수 있었고⁶²⁾ 이와 관련된 결사를 해산할 수 있는 법령이었다.

따라서 이 법령이 시행된 1941년 5월 이후 일본의 국체와 국가신도 체계에 동조할 수 없었던 종교 단체의 활동은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비밀결사로 활동하던 신종교 활동은 포교시의 교인의 언동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어 상당히 위협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었다. 정산과 무극도의 교인이 이를 일제의 전면적인 ‘종교단체해산령’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크다.

59) 교병철, 앞의 책, p.164 참조.

60) 아오노 마사야키, 앞의 책, p.398 참조.

61) 교병철, 앞의 책, p.165 참조.

62) 포교수단으로서의 언동이 국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오노 마사야키, 앞의 책, p.424 참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무극도는 1936년까지 합법적인 종교적 결사로 인정되었지만 일제의 탄압에 따라 1936년 비밀결사로 전환되어 1941년까지 비밀리에 종교활동을 지속하였고, 1941년 사실상 사상 검증에 해당하는 치안유지법이 개정 발효되자 신도들을 보호하고자 비밀결사 활동까지 중지하면서 해산했다고 할 수 있다.

IV. 나가며

무극도 역사에 대한 서술은 종단사의 기초를 정립하는 작업으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종단의 창립과 해산 시점에 대한 상이한 서술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여왔다. 본 연구는 상이한 서술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어떠한 서술이 대순종학의 관점에서 채택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상이한 서술의 가장 큰 원인은 무극도의 역사, 즉 정산의 행적에 대한 부정확한 전승과 이에 기반한 역사 해석이 면밀한 고증이나 검증없이 자료화된 것을 들 수 있다. 1950~60년대 수집된 정산의 행적을 기반으로 작성된 『전경』은 다른 교단 자료들에 비해서 앞서고 정확하지만⁶³⁾ 무극도 역사의 정보 기반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1970~80년대에 수집된 정산 관련 전승을 집성하고 새롭게 해석한 1980년대 후반의 태극도 경전이 무극도 역사의 정보 기반으로 자주 활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무극도와 태극도의 관련성이 무극도와 대순진리회의 관련성보다 더 깊다고 이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1968년의 태극도 분열과 1969년 대순진리회 창설 및 전개 과정을 보다 깊이 천착한다면,⁶⁴⁾ 대순진리회가 무극도와 태극도의 후

63) 여기에 관해서는 박상규, 「무극도 관련 문헌 연구: 비교 및 고증을 중심으로」, 『대순 사상논총』 41 (2022), pp.43-45, pp.50-54 참조.

신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고, 이에 따라 1950~60년대에 수집된 정산 관련 전승을 1974년에 가장 앞서서 경전으로 문헌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⁶⁵⁾ 또한 무극도 서술에 있어서도 정산의 견해를 수정 없이 계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태극도의 80년대 경전과는 달리 대순진리회 『전경』은 정산이 정립한 신앙체계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방증된다.⁶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순종학 연구자들의 경우 『전경』보다 1980년대에 발간된 태극도 문헌을 참고한 사전이나 논문을 무극도 서술에 활용했고, 이로 인해 대순종학 내에서 무극도와 관련된 상이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순종학의 무극도 연구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대순진리회요람』과 『전경』을 활용한다면 상이한 서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대순 신앙체계와 부합하면서도 일제의 종교 정책 및 여러 문헌 정보와도 모순되지 않는 무극도 창도와 해산 시기 등이 본 연구를 통해 고증되었다. 고증된 핵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종단 무극도의 태동은 1909년 4월 28일 정산의 봉천명이다. 둘째, 종단 무극도의 창도, 즉 탄생은 정산이 태인도장을 이룩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종교활동을 시작하는 1925년 4월이다. 셋째, 종단 무극도는 1925년 교단을 공개하고 ‘종교 유사단체’로 인정받았다. 넷째, 1936년 일제의 유사종교단체 해산 방침으로 탄압이 강화되자 정산은 태인도장을 떠나면서 종단을 비밀

64) 1968년 7월 우당이 감천도장을 떠난 후 태극도는 정산의 아들인 조영래를 중심으로 한 구파와 우당을 추종하는 신파, 즉 태극도정신회(태극도정신대책위원회)로 분열되었는데 태극도정신회는 1970년까지 부산의 태극도내에서 활동하다가 1971년 대순진리회에 합류했다. 대순진리회 측의 자료이지만 1968년의 분열 당시 지방포장부터 포령까지 총 189명 중 정신회 소속은 136명으로 실제 포교활동을 했던 간부들 중 우당을 추종하는 이는 2/3를 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순진리회는 태극도의 조직 및 인적 자원 대부분을 충실하게 승계했다고 볼 수 있다. 『성제일지』, 1971. 3. 26, 1971. 4. 9, 1971. 4. 10, 1971. 4. 11, 1971. 4. 12 참조.

65) 박상규, 「무극도 관련 문헌 연구: 비교 및 고증을 중심으로」 pp.43-45 참조.

66) 같은 글, pp.47-50 참조.

결사로 전환하고 1941년까지 은밀하게 종교활동을 전개한다. 다섯째, 정산이 무극도를 해산하는 시기는 강화된 <치안유지법>이 발효되어 일본의 국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종교 결사와 종교적 언동의 처벌이 가능해진 1941년 5월 이후이다. 여섯째, 도장이 총독부에 기증되는 시기는 1942년 4월이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교무부, 『진경』 초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4.
- _____, 『대순진리회요람』 1985년판, 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85.
- 교화부편찬실, 『수도요람』, 부산: 태극도교화부, 1963.
- 태극도본부교화부, 『태극도안내서』, 부산: 태극도본부교화부, 1966.
- 태극도편찬위원회, 『진경전서』, 부산: 재단법인태극도, 1987.
- _____, 『태극도통감』 재판, 부산: 태극도출판부, 1989.
- 『규정』, 부산: 태극도, 1963.
- 『태극도통감』, 부산: 태극도본부, 1956.
- 『태극도요람』, 부산: 태극도신도회, 1980.
- 『성제일지』
- 고병철, 『일제하 종교 법규와 정책, 그리고 대응: 종교 법규와 종교 범주의 관계, 그리고 남긴 숙제들』, 서울: 박문사, 2019.
- 권동우, 「유사종교해산령의 실체에 관한 연구: ‘무극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 44-4, 2021.
- 김해구, 「진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기틀: 창도 오십주년을 맞으면서」, 『태극도월보』 11, 1968.
- 김철수,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 대전: 상생출판, 2017.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무극도 해산시기에 대한 고찰」, 『대순회보』 85, 2008.
- 박상규, 「무극도 관련 문헌 연구: 비교 및 고증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1, 2022.
- _____, 「근대 한국 신종교의 조직 연구: 연원제를 중심으로」,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1.
- 박한경, 「연두사」, 『태극도월보』 (구)1, 1967.
- 아오노 마사야키, 『제국신도의 형성』, 배귀득·심희찬 옮김, 서울: 소명출판, 2017.

- 안후상, 「식민지시기 보천교의 ‘공개’와 공개배경」, 『신종교연구』 26, 2012.
- 윤이흠,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 서울: 모시는사람들, 2007.
- 종단역사연구팀, 「황새마을을 찾아서」, 『대순회보』 191, 2017.
- 「봉천명치성 봉행」, 『대순회보』 38, 1993.
- 「숙원의 「大眞高校」가 道峰區에 세워진다」, 『대순회보』 2, 1984.
- 「진법구현 … 66년사」, 『대순회보』 1, 1983.
- 「창도일 기념치성 성대」, 『태극도월보』 11, 1968.
- 全羅北道, 『無極大道敎概況』, 1925.
- 「無極敎徒속혀 사기한자피소」, 《조선일보》 1925. 5. 28.
- 「无極敎解散命令」, 《조선일보》 1925. 3. 27.
- 「無極大道敎徒의 心田開發第一步」, 《매일신보》 1936. 7. 7.
- 「無極道에도 鐵鎚」, 《매일신보》 1936. 6. 18.
- 「民衆을 荼毒한 無極道の 極惡相 (一)」, 《매일신보》 1936. 1. 26.
- 「[二]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1. 31.
- 「[三]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4.
- 「[四]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5.
- 「[五]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6.
- 「[六]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7.
- 「[七]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8.
- 「[八]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9.
- 「[九]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11.
- 「[十]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13.
- 「[十一] 所謂無極道妖怪相」, 《매일신보》 1936. 2. 14.
- 「安東無極敎도 切集會禁止」, 《매일신보》 1936. 6. 30.
- 「愛慾과 物慾의 生活로 瓦解될 無極大道敎」, 《동아일보》 1936. 1. 16.

■ Abstract

**Mugeuk-do (Limitless Dao): The Year of
Establishment and Dissol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Daesoon Jinrihoe**

Park Sang-kyu

Senior Researcher, The Asian Institute for Religions

Daesoon Jinrihoe, the religious order, originated from Mugeuk-do (Limitless Dao). Although a historical description of Mugeuk-do (Limitless Dao) is significant because it establishes a basis for the history of Daesoon Jinrihoe, it contains the issue of contrasting descriptions about the year of foundation and dissolution of the order. A major reason for these contrasting descriptions is the inaccurate transmission of the history of Mugeuk-do, that is, Jeongsan's activities, and the materialization of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based on these inaccuracies without meticulous research or verification. In other words, the scriptures of Taegeuk-do (Great-Ultimate Dao) after 1987, have been frequently used as the basis of information about the history of Mugeuk-do. Additionally, some researchers of Daesoon Studies have referred to documents based on the Taegeuk-do scriptures rather than those of Daesoon Jinrihoe, published in 1974 when

describing Mugeuk-do, which has led to contrasting descriptions. The order was divided into Daesoon Jinrihoe and Taegeuk-do in 1968 and the scriptures of Taegeuk-do were based on the analects of Jeongsan which had been collected and re-interpreted in the 1970s-80s. Accordingly, to resolve this issue, researchers need to utilize the scriptures of Daesoon Jinrihoe and carefully conduct historical research on other documentary information in conducting research related to Mugeuk-do.

In this research, the periods of foundation and disbandment of Mugeuk-do were drawn from the faith system of Daesoon Jinrihoe, but they are not contradictory to the documentary information on the religious policies implement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First, the religious order of Mugeuk-do was established on April 28, 1909, from Jeongsan's serving the heavenly mandate. Second, Mugeuk-do was founded in April 1925 when Jeongsan built the temple in Taein and started his religious activities based on the temple. Third, Mugeuk-do, which was similar to a secret organization, opened the order in 1925. By doing so, it was recognized as a pseudo-religious order. Fourth, as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reinforced to crack down on pseudo-religious orders in 1936, Jeongsan transformed the order into an underground organization when leaving the temple to protect devotees. Religious activities were conducted secretly until 1941. Fifth, Jeongsan is considered to have disbanded Mugeuk-do after May 1941 when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strictly imposed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ct to punish all religious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that negated the national identity.

Keywords: Daesoon Jinrihoe, Mugeuk-do (Limitless Dao), order on disbandment of Pseudo-religions, order on disbandment of religious organizations,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act, rule of propagation